



"기획은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2. 2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 장 : 박 경 아
사무관 : 김 병 준
전 화 : 500-1813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3P)

이 자료는 2012년 2월 29일 오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소 지정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제고에 밑거름 -

〈 주 요 내 용 〉

-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임
- ◇ 농식품부는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식품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해 금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을 1차로 50개소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농어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된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제품 개발·생산, 마케팅 등의 용도로 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또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부로부터 최대 3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지원내용(예산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①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기관 / 지원인원 : 지방자치단체 / 5~10인
 -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12년도 957,220원)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의 9.0% 한도로 지원.
 - 인건비 지원비율 : 1차년도 100%, 2차년도 90%, 3차년도 80%
- ②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기관 : 고용센터
 - 지원한도 : 연간 2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③ 예비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교육대상 : 신규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 교육기간 : 신규 지정 후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실시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협력 교육기관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브랜드화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마을단위 경영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며,

○ 제2기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5월에 신청·접수를 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7월 경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참고 1

농림수산물농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12년 50개소)

시·도	시·군	명 칭	유형	비고
경기(2)	양주	천생연분마을	도농교류형	
	양평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도농교류형	
강원(11)	춘천	솔바우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강릉	대관령어울림영농조합법인	도농교류형	
	홍천	(주)늘푸름홍천한우	농식품산업형	
	홍천	농업회사법인 홍천6년근인삼	농식품산업형	
	정선	낙동2리새농촌영농조합법인	도농교류형	
	철원	철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화천	화악산토마토영농조합법인	지역개발형	
	화천	화천현장귀농학교	도농교류형	
	인제	강원F&B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인제	설원농산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양양	황룡마을영농조합법인	지역개발형	
충북(5)	단양	한드미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옥천	산계돌친환경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음성	불개미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증평	장돌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충주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	도농교류형	
충남(2)	청양	천장리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	지역개발형	
	홍성	(주)홍성반딧불이농업회사법인	복합형	
전북(8)	군산	우리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익산	주식회사법인(주)산마루	농식품산업형	
	완주	안덕파워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완주	학동마을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시·도	시·군	명 칭	유형	비고
전북(8)	완주	완주로컬푸드건강한밥상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진안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복합형	
	진안	농업회사법인진안마을(주)	농식품산업형	
	고창	고창황토복분자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전남(12)	순천	순천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담양	(사)전남친환경농업교육원	도농교류형	
	고흥	신기거북이정보마을운영위원회	도농교류형	
	보성	보성배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장흥	청태전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강진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영암	태이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무안	배외체현마을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영광	연한가지(주)	농식품산업형	
	신안	압해배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화순	농업회사법인화순군농특산물유통(주)	농식품산업형	
	해남	산나물촌영농조합법인	도농교류형	
경북(6)	상주	아자개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상주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상주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농식품산업형	
	포항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영주	아람진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봉화	봉화김치마을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경남(3)	산청	산청조성유배합사료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창원	미더덕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창원	가고파수출영농조합법인	지역개발형	
제주(1)	제주	제주자색고구마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	

참고 2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조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기관	고용노동부	광역시·도·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
①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4대보험(건강,연금,산재,고용보험) 가입필수 ※건강보험가입필수		
③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자 30%이상		좌동,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을 수혜자로 하거나 고용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 30%이상 ※5인이상 고용필수		
	○지역사회공헌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수혜자 비율이 20%이상 ※지역사회공헌증명필요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자 비율이 각각 20%이상		
	○가타형 : 육성위원회심의	○가타형 : 자체위원회심의	○가타형 : 심사위원회심의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위원회, 이사회 등에 수혜자, 근로자 참여 ※정관, 회의록 기재 및 공증	- 해당 없음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수입이 노무비의 30%이상 ※세무/회계기관 확인	- 해당 없음 -	
⑥정관 규약구비 및 기재사항준수	○법정사항의 조건구비 : 목적,사업내용,명칭등	- 해당 없음 -	
⑦사회적목적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과 청산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역 조건	- 해당 없음 -		○농어촌지역 대상
※증명서류의 조건	신청일 직전 6개월	신청일 직전 3개월	